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 8. 20 선고 2020가단12273 판결 [사해행위취소 등]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동

담당변호사 이종린

변 론 종 결 2021. 7. 9.

판 결 선 고 2021. 8. 20.

주 문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2017. 11. 1. 매매계약은 117,923,697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17,923,69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와 2008년경부터 동거하면서 D일자 자녀 E를 출산하였고, 2013. 5. 24. 혼인신고를 마쳤으며, 2017. 5. 24.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혼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이혼조정’이라 한다. 내용 중 ‘신청인’은 C을, ‘피신청인’은 피고를 의미한다).

1.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혼한다.

2.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재산분할로,

가. 신청인 명의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모두 신청인의 소유로,

나. 피신청인 명의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모두 신청인의 소유로

각 확정적으로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

3.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신청인을 지정한다.

4.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17. 1. 1.부터 2028. 11. 26.까지 매월 1,000,000원씩을 매달 25일에 지급한다.

5. 신청인은 사건본인이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사건본인의 대학등록금 및 학비를 전액 부담한다.

6. 신청인은 사건본인의 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사건본인을 자유롭게 면접교섭할 수 있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위 면접교섭에 적극 협조하며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향후 상호간에 위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이 사건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등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나. C은 2013. 12. 25. 원고에게 신용카드회원가입을 신청하고 원고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고 있었다. C이 2017. 10. 27.경 신용카드대금을 연체하자, 원고는 C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차전8070호,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위 법원은 2017. 1. 18. ‘C은 원고에게 83,561,890원 및 그 중 80,738,141원에 대하여 2017. 1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라는 지급명령을 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C에게 공시송달되어 2018. 3. 6. 확정되었다.

다. C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2017. 11. 9. 접수 제89050호로 2017. 11. 1.자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채무자를 C,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F(이하 'F은행'이라 한다), 채권최고액을 308,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라. C은 2017. 11.경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마. 피고는 2019. 4. 2. G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고, 2019. 4. 16.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 사건 부동산에 마쳐져 있던 F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9. 4. 16. 말소되었고, 같은 날 채무자를 G,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H으로 하는 새로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0 내지 14호증, 을 제2, 3, 7,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C에 대한 신용카드대금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 전에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원고는 이 사건 매매가 실제로는 전 배우자인 피고에 대한 증여이고, 그로 인하여 C의 채무초과 상태가 더욱 악화되었으므로 사해행위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재산분할 및 양육비로 이 사건 부동산을 이전받으면서 담보대출채무의 이자를 변제하고 가압류등기를 말소하였으므로, 이를 과대한

재산분할이라 할 수 없고, 부양적 성격을 가진 정상적인 거래로서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이혼조정 및 그 전에 피고와 C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를 보면, 피고와 C이 각자 명의로 소유한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각자의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재산분할에 합의한 점, ② 피고와 C은 이 사건 이혼조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향후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한 점, ③ C이 약속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매매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매매가 재산분할로서 이루어졌다고 할 수는 없고¹⁾, 피고가 C에 대한 양육비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물변제를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다85161 판결 참조),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C이 사실상 증여 내지 대물변제에 해당하는 이 사건 매매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이전해 준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가 C에 대해 양육비 채권, E의 대학등록금, 학비 채권 등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매매가 사해행위가 아니게 된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C은 원고에 대하여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또한 추정된다.

다.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 또는 전득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하는바, 여기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함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로부터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고,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수익자로부터

전득자로 이전되어 그 등기까지 경로되었다면 후일 채권자가 전득자를 상대로 소송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익자가 전득자로부터 목적물의 소유권을 회복하여 이를 다시 채권자에게 이전하여 줄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모르되, 그렇지 아니한 일반의 경우에는 그로써 채권자에 대한 목적물의 원상회복의무는 법률상 이행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316 판결 참조).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그 취소 및 가액배상은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 수익자가 취득한 이익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하고, 피보전채권액은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되 이후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도 포함되며,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1490 판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6391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제3자에게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이 사건 매매 전 마쳐져 있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고 새로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원상회복의무는 법률상 이행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가액배상금액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 및 수익자인 피고가 취득한 이익의 범위 내에서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상당을 가액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고, 갑 제2호증, 을 제4, 5, 7,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가액배상금액은 피보전채권액,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 수익자가 취득한 이익 중 적은 금액인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117,923,697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라 C에 대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가지는 원리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인 117,923,697원을 피보전채권금액 및 가액배상금액으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피보전채권액으로 한다.

② 이 사건 부동산의 2017. 11. 1.경 시가는 410,000,000원이고,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274,013,202원이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제공되어 있던 부분은 135,986,798원(= 410,000,000원 -

274,013,202원)이 되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1. 7. 9.경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240,986,798원(=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1. 4.경 시가 515,000,000원 - 274,013,202원)이 된다.

③ 사해행위 당시 어느 부동산이 가압류되어 있다는 사정은 채권자 평등의 원칙상 채권자의 공동담보로서 그 부동산의 가치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가압류가 된 여부나 그 청구채권액의 다과에 관계없이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성립한다. 따라서 사해행위 후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그 가압류 청구채권을 변제하거나 채권액 상당을 해방공탁하여 가압류를 해제시키거나 또는 그 집행을 취소시켰다 하더라도, 법원이 사해행위를 취소하면서 원상회복으로 원물반환 대신 가액배상을 명하여야 하거나, 다른 사정으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에도 그 변제액을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37474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매매 전 이 사건 부동산에 마쳐져 있던 I의 가압류등기를 말소하기 위하여 피고가 C 대신 I에게 13,000,000원을 지급하고 가압류를 해제시켰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제할 것은 아니다.

라. 소결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와 C 사이의 이 사건 매매는 117,923,697원의 한도 내에서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117,923,69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14년경부터 C와 별거하고 있었고 C의 카드 연체 사실도 몰랐으며 C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변제를 받은 것이 아니므로, 자신이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한다.

채무자의 책임재산 처분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다카24762 판결,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다12526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C이 이 사건 이혼조정에 따른 양육비 지급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좋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도 C에게 양육비 지급을 독촉하고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부동산에 거액의 가압류등기가 2건, 비교적 소액의 가압류등기가 1건 마쳐져 있었고, 이 사건 매매 당시까지 채권금액 13,000,000원의 가압류등기가 해결되지 아니하여 결국 피고가 이를 변제하기도 한 점, ③ 피고가 변제와 관련하여 들고 있는 판례는 금원지급행위 사안으로서 부동산의 증여나 대물변제에 해당하는 이 사건에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이나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추정이 반복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혜정

목 록

1. 1동의 건물의 표시

경기도 김포시 아파트 동

(도로명주소) 경기도 김포시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번호 :

구 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면 적 : 9 층 호 123.8019평방미터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경기도 김포시 대 30102평방미터

대지권의종류 : 소유권

대지권의비율 : 30102 분의 87.17

1) 따라서 이 사건 매매가 재산분할로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한 원고와 피고의 주장들(이 사건 매매가 과대한 재산분할인지에 관한 주장들)은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